



2023년 산학연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

"2023년 산학연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지원사업"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03월 27일
(재)전남테크노파크원장

1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전남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과 공동 R&D를 통해 지역·현장 맞춤형 수요기술을 개발
- (지원규모) 850백만원 내외
- (사업기간) 협약 일로부터 12개월
- (지원내용) 대학·연구기관의 인프라(인력·기술·장비 등)를 활용하여 농공단지 중소기업의 협력 R&D* 지원
 - * 협력R&D : 소재, 부품, 공정 등의 신제품 개발과 기존제품의 개선
- (지원방법) 전남지역 농공단지 내에 사업장(본사, 지사)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학·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구성

구 분	주관기관	공동연구기관	지원과제수	지원규모
산·학 연계	도내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	대 학	9개 내외	과제당 100백만원 내외 (12개월)
산·연 연계	도내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	연구기관		

*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별 지원규모(사업비, 지원과제 수)는 조정 가능

- (지원유형) 자유공모

2

신청자격

- (주관기관)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설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고 사업장(본사, 지사)이 전남도 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는 중소기업
 - * 지사의 경우, 전남지역 농공단지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
- (주관연구책임자) 기업부설연구소장 또는 임원급 이상이 원칙
 - * 주관기관 책임자는 사업 신청기관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
- (공동연구기관) 대학 또는 연구기관

공동개발기관	자격 내용
대학	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「기능대학법」에 의한 기능대학 ※ 지역제한 없음
연구기관	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연구기관* 중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, 전남도 내 소재한 연구기관에 한함 * 국공립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

- (공동연구책임자) 대학은 소속 대학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전임 또는 비전임 교수, 연구기관은 선임급 이상이 원칙
 - * 단, 계약기간이 정해진 자일 경우 과제개발완료 시점 4개월 이후까지 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참여 가능

3

유의사항

- (신규인력 채용) 지원과제 당 신규 연구인력 채용 1인 필수
 - * 신규인력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까지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
 - * 협약시 '신규인력채용(예정)확약서'를 제출하고 채용 후 과제 참여인력으로 등록
 - * 과제 참여인력으로 등록된 신규인력은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. 단,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고용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불가

- **(연구상한제 적용)**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신청 과제 포함하여 연구책임자 최대 3개, 연구자는 최대 5개로 제한
 - 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0백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기준 (기업지원서비스(비R&D)사업은 적용 제외)
 - * 협약기준 3개월 미만 종료 예정인 연구개발사업은 포함하지 않음
- **(연구 참여율)** 과제 책임자의 최소 과제참여율은 20%, 참여 연구원은 10% 이상을 계상하여야 함
- **(사업비 편성)** 현금사업비(지원금 + 민간부담금)의 51% 이상을 주관기관에 편성하여 사용
- **(사전 중복성 검토)** 주관기관은 기존 사업을 검토하여 신청과제와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분석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
 - *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검색을 통해 유사과제 검색결과 제출 (www.ntis.go.kr : “과제 참여→유사과제→유사성검토”)
- **(참여제한 여부 검토)**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사업 신청 시 제재 (또는 참여제한) 정보 검색결과를 제출해야 함(비영리기관 제외)
 - *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> 과제관리 > 제재정보조회
- **(연구노트)** 과제수행기관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반드시 작성
- **(신청자격)** 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, 사업기간 동안 주관·참여기관이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해지 및 동 사업 운영지침 제36조에 의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* 예) 주관기관이 법인 인수합병에 따라 도내 농공단지 내 사업장을 도내 농공단지를 제외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
4

지원제외 대상

- 기업과 대학(또는 연구기관)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을 하되, 기업과 대학(또는 연구기관)의 관련자가 다음에 정한 특수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

- 공동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(또는 연구기관의 대표자 및 책임자)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인 경우
 - * 대주주 : 회사 주식의 30% 이상을 소유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
-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
-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와 기업의 대표 또는 대주주가 서로 배우자 및 직계혈족,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의 관계인 경우
-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기업* 또는 전남지역 농공단지 내 입주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
 - * 도내 농공단지 내 위치한 사업장(본사, 지사) 기준 설립일 판단
-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기업 및 대학(연구기관) 등
-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양식 미준수
- 사업계획 내용이 기 개발 되었거나, 타 사업에서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
- 전년도 산학연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과제의 주관 기업인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수행결과 정산잔액 미납중인 신청기관이 포함된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공동연구기관, 주관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제재 (또는 참여제한) 대상일 경우
-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공동연구기관, 기업의 대표이사, 연구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 -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·화의·법정관리 중인 경우
 -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
 -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, 부채비율 1,000% 이상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
 - * '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'21년도 결산이 미확정인 경우는 '20년도 재무제표로 판단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신청기관 또는 기업
-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 - * 최종협약 이전에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·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

5

사업비 구성 및 가점 부여

□ 사업비 구성

○ [총사업비] = [도지원금] + [민간부담금(수행기관부담금)*]

* 민간부담금의 2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. 100% 현금 부담도 가능

총사업비 (A+B)	도지원금 (A)	민간부담금(B, 30%이상)			비고
		계	현금	현물	
100%	최대 70%	100%	20%이상	80%이하	

[사업비 산출 예시]

(단위 : 천원)

총사업비 (A+B)	지원금 (A, 70%)	민간부담금(B, 30%)			비고
		계(100%)	현금(20%)	현물(80%)	
142,858	100,000	42,858	8,572	34,286	민간부담금 최소부담비율 적용

□ 가점 부여

○ 도내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*, 기업부설연구소** 설치 기업 가점 부여

*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

** 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기업

○ 사전검토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여부 확인

가점 항목	배 점	비고
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	3점	최대 5점
여성기업	2점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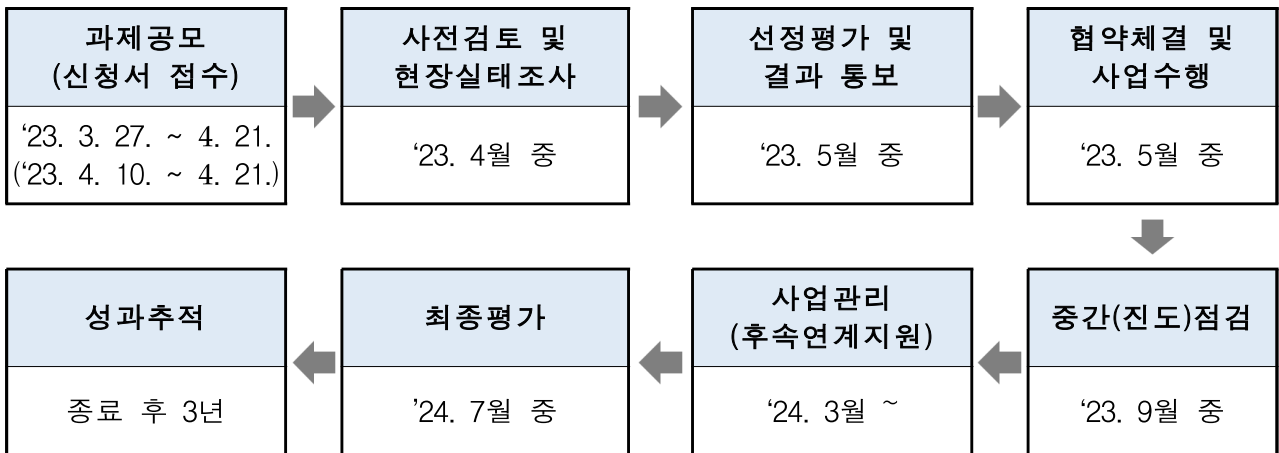
6

추진절차

□ 추진내용

- 사업공고
 - (공고방법) 전남도 및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재
- 사업선정
 - (사업계획서 접수) 공고마감 전 7일간 접수
 - (선정평가방식) ①서류검토 ②현장점검 ③서류 및 발표평가

□ 세부절차



* 상기 추진절차는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

7

평가항목

□ 평가지표 : 기술성 및 개발능력 등 4개 항목

항목	세 부 항 목	평가지표	배점
기술성 및 개발능력 (40)	목표의 적정성	- 산학연 연계 목표 및 인력양성의 명확성 -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설정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 정도 측정의 명확성	10
	보유기술의 차별성	- 국내·외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	10
	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	- 연구개발 방법, 내용,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타당성 - 수행기관 구성·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- 참여인력 및 사업비 구성·배분의 적절성	10
	기술개발 결과물의 도출 가능성	-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성공 가능성 - 사업화 핵심 애로기술 개발 및 해결방법의 적정성 - 당초 기술보유자와의 협업능력	10
사업비의 적정성 (15)	사업비 편성의 적정성	- 연구내용, 연구범위 및 수행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른 연구비 구성의 적절성	5
		- 신청사업비 산정의 적절성	10
산학연 협력 (15)	협력 연구활동	- 주관기관-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 협력정도	10
		- 산학연 연계에 따른 고용창출 및 사업화 기여도	5
파급효과 및 활용계획 의 실질성 (30)	고용촉진 가능성	- 주관기업의 연구인력 고용 계획의 명확성 - 참여연구원의 고용촉진 가능성	5
	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	- 결과물의 시장진입(매출발생) 가능성 - 시장규모에 따른 향후 매출의 성장성	15
	경제성 및 파급효과	- 기업의 수요 애로기술 및 중장기 R&D 기술해결에 대한 기여도	5
-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한 수익성, 매출 성장 가능성,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, 일자리 창출 효과		5	
계			100

8

공고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2023. 3. 27.(월) ~ 4. 21.(금)
- 접수기간 : 2023. 4. 10.(월) ~ 4. 21.(금), 2주간
-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(data.jntp.or.kr)
 - * 우편, 이메일, 방문 접수는 시행하지 않음
 - 사업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
 - * 회원가입 절차에 1-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전 가입 요망

○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명	제출부수	비고
1	사업계획서	원본 1부	
2	수행기관부담금출자확약서 - 사업계획서 소요예산 작성시 해당금액 활용계획을 명시	원본 1부	
3	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	원본 1부	
4	기업파견계획서	원본 1부	해당시 제출
5	청렴서약서	원본 1부	
6	공동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	원본 1부	
7	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	원본 1부	
8	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	사본 1부 * 원본대조필 날인 必	
9	최근 3년간 재무제표 -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	사본 1부 * 원본대조필 날인 必	기업만 제출
10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원본 각 1부	기업만 제출
11	4대보험 가입자명부	사본 1부 * 원본대조필 날인 必	과제 책임자
12	가점항목 증빙서류 (* 가점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되어 유효한 자료만 인정) -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여성기업 확인서	사본 1부 * 원본대조필 날인 必	해당시 제출
13	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(*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)	원본 각 1부	
14	유사과제 검색결과	원본 1부	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시,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

○ 기타사항

- 신청서식은 전남도청 및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- 제출받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9

문의처 및 담당자

전담기관	담당자	연락처	비고
전남테크노파크 (기업진흥본부)	조경호 연구원	061-729-2749 (ho9290@jntp.or.kr)	-